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발 의 자 : 이지연 의원 외 7명

2. 제안이유

1회용품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함으로써 자원낭비 방지와 지역사회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1회용품 사용 저감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 시 1회용품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포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기 타 : 조례안 예고(2021. 5.18. ~ 5. 25.)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구미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안」은,

- 1회용품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과 제공을 줄이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발의된 것으로,
- 1회용품 사용 증가¹⁾에 따른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 지침(국무총리 훈령)」을 법제화하여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구미시에서는 이번 달부터 청사 내 1회용품 사용을 전면 금지하며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제정취지가 국가 및 구미시의 시책과 부합하며 조례가 제정되면 공공기관이 1회용품 줄이기를 선도적으로 실천하여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1) 커피전문점 증가, 배달음식문화 발달 등으로 1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내 150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플라스틱 수거량이 2019년 2,717톤에서 2020년 3,304톤으로 약 22% 증가함.